

시행착오 거듭하는 미국의 성범죄 보도

前澤 猛

일본 금택여자대학 교수

이 글은 일본 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문연구」 (1992 년 2 월호)에 실린 일본 금택여자대학의 前澤 猛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보도는 자유의 대명사, 수정 제 1 조

일본에 비하면 미국 유력신문의 범죄보도는 적은 편이다. 「인권감각에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꼭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 범죄다발도시에서는 살인사건마저도 흔히 있는 사건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범죄는 뉴스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유명인에 관한 사건은 프라이버시와 얽혀있어도 과대하게 취급된다. 일본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면도 문자 그대로 현실적인 사회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다를 데가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건보도의 취급을 「뉴스가치」로 결정한다는 냉혹한 일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해 미국의 미디어가 야단스럽게 추적한 「케네디 스미스의 강간사건」은 그 예증이 될지도 모른다. 사건의 인물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 씨는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던 명문 케네디 가의 한 사람으로, 또한 고 존 F.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조카로서 뉴스가치에는 부족함이 없다.

케네디 스미스 사건-1991 년 4 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여성(31 세)이 케네디 스미스 씨(31 세)를 강간으로 고발했다. 3 월말의 미명, 스미스 씨를 술집으로부터 자동차로 동지역내에 있는 케네디가의 별장에 데려다 준 뒤 별장 내에서 스미스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것. 그는 성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2 월 11 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지방법원의 배심은 무죄를 평결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영자지에서도 비교적 크게 보도되었으나 일반지들은 뉴스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독자의 눈에 띄일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사건보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각별히 이 보도의 경과와 문제점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그에 앞서 사족 같지만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헌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12 월 일본의 미디어가 모차르트 사후 2 백년 기념으로 들끓고 있을 때 미국의 미디어는 「권리장전」 탄생 2 백 년을 축하하고 있었다.

「권리장전」은 미국연방성문헌법 최초의 수정헌법(제 1 조 내지 제 10 조)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1791 년 12 월 15 일에 발효되었다. 제 1 조는 「언론, 집회, 보도의 자유」를,

제 5 조, 제 6 조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 제 14 조는 뒤늦게 남북전쟁후인 1868 년에 만들어졌다.

굳이 연방헌법을 살피게 된 것은 그것이 미국의 사회와 미디어에 현실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 월 연방의회와 미디어는 연방대법원판사 후보 크레런스 토마스 씨의 적격성과 성적 스캔들을 심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대법원의 헌법판단이 미국사회의 방향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보도의 자유」는 유감스럽게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그러나 다른 두개의 수정조항 「공정한 재판의 보장」과 「인권의 존중」과의 조화도 요구되고 있어 그러한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미디어는 기본적으로는 「보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권리장전」의 가장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Amendment First」(수정헌법 제 1 조)는 「보도의 자유」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전적으로 미디어 자신이 결정한다」는 자세를 절대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는 강간 등 성적 범죄의 보도에서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성적 범죄는 미국의 사회가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커다란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콘크리트에 혼합한 살인사건의 보도에서 살해된 여자 고교생의 신원을 숨겨주고 있으나 미국의 언론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살해된 피해자에게 프라이버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법률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익명의 취급은 사자의 존엄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뉴스의 요소를 빠뜨려 사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케네디 스미스 사건보도의 문제점

케네디 스미스 사건에 대해 미국의 미디어는 일본의 미디어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과대한 뉴스가치를 두었다. 거기에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와 미디어의 높은 관심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3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제 1 단계>-1991 년 4 월초 미디어는 케네디 스미스를 실명으로, 여성을 익명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나 7 일에 영국의 타블로이드지인 선데이 미러가 여성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 1 주일 후 플로리다주의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글로브가 미국 내에서 는 최초로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 때마침 이때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는 옴부즈만 연차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러한 보도를 본 옴부즈만들은 「할 말이 없다」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그러던 중에 1991 년 4 월 16 일 저녁 NBC-TV 가, 다음날 17 일에는 뉴욕 타임스지가 잇달아 여성의 이름을 공표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특히 여성과 가족의 내부사정, 과거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NBC 의 가트너 회장은 「시청자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뉴욕 타임스지는 사고를 통해 「NBC 의 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미디어의 태반은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익명을 계속 썼으며 뉴욕 타임스사 내에서도 기자들이

비판집회를 열어 편집간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뉴욕 타임스지의 칼럼니스트인 안나 쿼드렌 씨는 「센트럴파크 사건(후술)의 피해자의 이름을 나는 쓰지 않았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며 독자에게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기사취급은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해오면서도 상상하지 못했으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뉴욕 타임스지는 마침내 26일 지면의 「편집자노트」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그때까지의 경과를 특별기사 「미디어 메모」를 통해 상세히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프라이버시는 한번 공표되면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법적해석과 그에 따른 그때까지의 편집방침(후술)을 포기한 셈이 된다. 그것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분위기의 고조에 동지도 역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단계>-12월 2일의 첫 공판부터 11일의 무죄평결까지의 집중심리의 모습을 미국과 영국의 신문, TV는 연일 상세하게 보도했다. CNN-TV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코트(법연) TV는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뉴욕 타임스지와 워싱턴 포스트지는 5일(고발자가 증언), 7일(에드워드 케네디 씨가 증언), 11일(피고가 증언), 12일(평결)은 1면에 취급했으며 그밖에도 연일 본 기사와 관련 기사를 여러 페이지에 걸쳐 게재했다. 런던 타임스지도 첫 공판을 1면에 취급했으며 무죄평결을 전할 때에는 기사와 사진으로 1면의 3분의 2를 메우는 열기를 보였다. 법원의 명령도 있고 해서 근래 미국의 신문은 고발자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하지 않으며 TV도 생방송에서는 타임래그를 붙여 법연발언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얼굴모습도 바림해서 방영한다. 그러나 그 밖에는 대부분 제약이 없이 증언중의 노골적인 단어나 성묘사가 그대로 공표되었으며 피고와 여성의 증인의 신빙성에 관해 시청자로부터 양케이트를 받는 TV마저 있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도 「과잉」이라는 미디어내의 비판은 적으며 주요지는 「이러한 결과로 해서 돈 있는 피고는 승리하고 여성은 패한다든가, 구경거리나 멜로드라마가 되기 쉬우므로 성적 사건은 TV에서 방영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워싱턴 포스트지 사설) 「TV를 본 많은 미국인들은 고발자의 증언에 마음이 흔들렸다. 스미스 씨의 증언에 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비열한 남자였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TV 방영에는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우리들은 이 재판에서 법과 인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뉴욕 타임스지 사설)고 긍정적이었다.

<제 3 단계>-평결로부터 약 1주일후인 17일 여성은 ABC-TV의 인터뷰에 응해 19일의 방영에서 이름과 모습이 공개되었다. 「나는 푸른 얼룩(얼굴 모습을 숨긴 TV 화면을 뜻함)이 아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영향을 주어 다른 피해자가 사건을 숨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패트리샤 버몬은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했다. 과연 미디어는 속아 넘어간 것일까. 강간 피해자가 이름을 내놓고 나오는 최근의 움직임(후술)으로 보더라도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의 미디어는 일제히 실명보도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그 지방의 플로리다 타임스 유니온지의 움부즈만 마이크 클라크 씨는 「피해자가 프라이버시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을 쓰고 기사를 팔고 민사재판을 제기했을 경우 미디어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라고 칼럼을 통해 독자에게 묻고 있다.

미국사회의 난제, 성적 범죄

성적 범죄가 마약과 함께 미국사회의 난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미디어의 입장에서 보아도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 동시에 취급상의 시비가 가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 자신의 좁은 체험에서도 알 수 있는데 미국에 갈 때마다 다음과 같은 성적 범죄보도가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985년 「조단사건」-1983년 미네소타주 조단 시에서 40명의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30여명의 어른이 고발되어 24명이 체포되었다. 용의자는 실명으로 크게 보도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 것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 고장의 미네아폴리스 스타 앤드 트리뷴지는 6~10페이지의 추적 기사를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했다.

같은 해 「강간재판논쟁」-워싱턴 주 쉐턴에서 열린 2건의 강간사건 공판에 관해 그곳 지방지가 「재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만 한다」라는 편집방침에 따라 고교생(16세)과 주부(36세)의 실명을 밝혀서 보도했다. 이 논쟁을 문제삼은 뉴욕 타임스지는 학생의 이름은 익명으로 했으나 주부에 대해서는 이름과 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표했다. 1986년 「학생기숙사강간사건」-샌디에이고 대학의 신입생 환영제날 밤, 한 여학생이 남학생기숙사에서 집단강간 당했다.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미디어는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였다」는 종래의 해석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했다.

같은 해 「여성사건기자에 플러처상」-수상한 플로리다 마이애미 헤럴드지의 기자 에드너 브캐넌 씨는 연속폭행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카 씨와 단독으로 회견, 그 상세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공표하여 일약 유명하게 된 사람이다.

1987년 「게리 하트사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게리 하트 씨의 여자관계를 마이애미 헤럴드지가 특종을 했다. 동지는 처음에는 여성의 이름을 숨겼으나 다른 신문들이 상대여성의 신원을 공표했다. 그 이후 워싱턴 포스트지도 또 다른 여성관계를 보도했는데 그 보도를 사전에 알게 된 게리 하트 씨는 기사게재 직전에 선거전에서 사퇴했다.

1988년 「데트 번디사건」-1974년부터 4년간 36명을 살해한 사형수 번디의 형집행(1989년 1월)을 앞두고 사건의 내용이 영화, 단행본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센세이셔널하게 취급되었으며 이와 함께 피해자의 유족까지도 추적했다.

1989년 「센트럴파크사건」-4월, 뉴욕 시 중심의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고 있던 여자가 흑인소년에게 폭행 당해 빈사상태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 각지는 체포된 6명의 소년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했으며 피해자의 이름은 숨겼다.

1990년 「강간피해자의 자주적 공표」-제인 솔러 기자가 강간피해자의 협력을 얻어 사건발생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실명으로 기사화하고 디모인 레지스터지가 이를 연재했다. 동기자의 권유로 피해자가 스스로 잇따라 미디어에 이름을 밝혀 사건의 방지, 사회적 편견의 해소, 피해자의 구제 등을 호소했다. 솔러 기자는 다음해 플러처상을 수상했다. 한편 범죄피해자전국센터는 「보도에 의한 제2의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서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미디어」를 내놓았다.

1990 년 「맥마틴사건」-1984 년 208 건의 아동학대혐의로 로스앤젤레스의 보육소의 경영자 가족 등 7 명이 기소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 끝에 1990 년 1 월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무죄가 되었다. 과열보도를 비판한 데이비드쇼 기자의 추적조사기사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4 일간에 걸쳐 특집 연재하여 이것 역시 다음해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1991 년 「케네디 스미스사건」-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보도의 자유」, 「인권의 존중」, 「재판의 신」 라는 세가지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죄보도의 논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다양성과 자주성을 절대시하는 미국에서는 이들 이익간의 조화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통일된 보도기준을 확립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은 결국 「인권」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시민과 미디어 쌍방의 인식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나 케네디 스미스 사건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